



[제33호서식]

등부 2025 년 제 5483 호

인 증 서

임시총회의사록

2025년 9월 2일 11시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다.

총회원수 : 14명

참석회원수 : 10명

의장인 대표권있는 이사 김*태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,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.

제 1 호 의 안 : 정관변경의 건

의장은 당 법인의 정관개정을 별첨안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묻은 바 출석회원 전원 **이의없이** 승인가결하다.

제 2 호 의 안 : 분사무소 폐지 및 신설의 건

의장은 당 법인의 분사무소 정당의원(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1, 1. 3층 (봉선동, 무등프라자))을 폐지하고, 아래와 같이 분사무소를 신설한다.

-다 음-

(하남시 지회)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, 518호(풍동)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을 알고 폐회를 선언하다.
(때는 11시 30분)

위 회의의 경과요령과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.

2025년 9월 2일

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

의장 이사(대표권 있는 이사) 김 * 태(법인의장)

이 사 김 * 태

이 사 이 * 은

이 사 배 * 경

이 사 이 * 현



정관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재활용 활성화를 기조로 화석에너지 절감사용·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녹색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. 또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창출하여 에너지 산업관련 종사자 및 취약계층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부가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제1항 보호육성법에 따라 장애인 및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자립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다목 적용단체이다.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제4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. 에너지 생산·재생·재활용 및 절약을 위한 국민 교육·홍보·관리효율화사업 나.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 보급사업 (스마트발전기, 공기청정기, 의료보조기구, 장애인 전동휠체어, 여가산업, 글램핑, 캠핑장) 등)	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재활용 활성화를 기조로 화석에너지 절감사용·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녹색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. 또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창출하여 에너지 산업관련 종사자 및 취약계층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부가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제1항 보호육성법에 따라 장애인 및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자립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다목 적용 단체,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(국유·공유재산의 우선배각이나 유상·무상대여)적용 단체임.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제4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 1. 에너지 생산·재생·재활용 및 절약을 위한 국민 교육·홍보·관리효율화사업 나.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서비스 보급사업 (스마트발전기, 공기청정기, 의료보조기구, 장애인 전동휠체어, 여가산업(행사기획 및 운영대행, 글램핑, 캠핑장) 등) 5.항 에너지 산업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장학 자격증 취득, 취업알선사업 <추가> 마. 수상안전교육 및 파견

등부 2025년 제 5483 호

인 증

위 사단법인 장애인미래에너지창조연합회 _____의
2025년 9월 2일자 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하여 _____
회원 겸 이사 김*태, 동 이*은, 동 배*경, 동 이*현, 회원 배*열,
동 임*재, 동 서*기, 동 김*규, 동 배*선, 동 최*욱의 각 대리인
안승철은 _____
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
하고,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
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
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축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
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

2025년 9월 4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

공증인가 법무법인 아 시 아

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5, 3층 (서초동, 중산빌딩)

공증담당변호사

이 라 예

아 래

-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. 운전면허증 | 2.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| 3. 확인서 | 4. 진술서 |
| 5. 회원명부 | 6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7. 정관 | |